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7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3누13759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구○○, 박○○
피고, 피항소인	○○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6. 선고 2022구합77713 판결
변 론 종 결	2024. 7. 19.
판 결 선 고	2024. 7.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7

이 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2, 13행의 "중소기업창원 지원법"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행의 "이 사건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중소기업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고는 2018. 2. 8. 부동산매매업, 물류창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이 발생한 것은 2019. 9. 25. 목적사업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을 추가한 이후이므로 추가된 방송통신사업 등도 창업 당시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방송통신시설인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창업 당시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 4,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7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취득세 납부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 납부 의무는 사용승인일인 2020. 7. 10. 시행 중인 지방세법에 의하여 성립하고, 그 감면 여부도 사용승인일 당시 시행 중이던 개정된 구 지특법 제58조의3에 따라야 한다.

② 개정된 구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2020. 12. 31.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인의 창업일을 설립등기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용도가 방송통신시설로 설립등기일 당시 목적사업인 부동산매매업, 물류창고업 등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의하면, 원고의 2018년 및 2019년 매출과세표준이 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혜택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이 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창업일을 설립등기일이 아닌 매출발생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10-17

재판장 판사 심○○

판사 차○○

판사 이○○